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오세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237

발의연월일: 2024. 9. 24.

발 의 자: 오세희·박홍근·채현일

박해철・김 현・주철현

이기헌 • 박희승 • 강준현

서영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제도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,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 있음. 또한, 지역 실정에 적합하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의무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량권을 이용하여 의무휴업일 지정을 철회하거나 영업시간을 1시간만 제한하는 등 입법 취지를 무 력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 하여금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반드시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 지정을 명하도록 하고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,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12조의2).

법률 제 호

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대형마트"를 "대형마트"로, "명할 수 있다"를 "명하여야 한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"지정하되,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"를 "지정하여야 한다"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의2(대규모점포등에 대한	제12조의2(대규모점포등에 대한
영업시간의 제한 등) ① 특별	영업시간의 제한 등) ①
자치시장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	
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, 근로	
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	
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(相	
生發展)을 위하여 <u>필요하다고</u>	<u>대형마트</u>
<u>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</u> (대규	
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	
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	
포함한다)와 준대규모점포에	
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	
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	<u>명하여야 한</u>
지정하여 의무휴업을 <u>명할 수</u>	<u>다</u>
<u>있다</u> . 다만, 연간 총매출액 중	
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	
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수산	
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	
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	
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	
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	
그러하지 아니하다.	
1. • 2. (생 략)	1. • 2. (현행과 같음)

② (생 략)

④ (생 략)

- ③ 특별자치시장・시장・군수③ -・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-----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-----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의무휴-----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-----되,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한다.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.
- - ④ (현행과 같음)